

# 노인의 인권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2011. 10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Contents

## CHAPTER I

### 노인인권 • 3

1. 인권의 개념 / 3
2. 노인인권 / 4
  - 1) 노인인권의 중요성 / 4
  -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 4
  - 3)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7

## CHAPTER II

### 노인학대 • 13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현황 / 13
  - 1) 노인학대의 정의 / 13
  - 2) 노인학대의 발생현황 / 14
2. 노인학대의 특성 및 유형 / 22
  - 1) 노인학대의 특성 / 22
  - 2) 노인학대의 유형 / 23
3. 노인학대의 요인 / 27
  -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 28
  -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 29
  - 3) 가족상황적 요인 / 30
  - 4) 사회적요인 / 31

#### 4.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 33

-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33
-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 33
- 3) 벌 칙(노인복지법 제 7장) / 34

### CHAPTER III

## 노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전략 • 35

#### 1.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 35

-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 35
-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 35
-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36

#### 2. 노인의 인권존중에 관한 사례관리 / 36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교재

# 노인의 인권

- Chapter I 노인인권
- Chapter II 노인학대
- Chapter III 노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전략

## • 학습 목표

노인의 인권을 이해한다.  
노인학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한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실무적용 능력을 함양한다.

## • 용어정의

- **노인인권** :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 **노인학대** :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Chapter

# I

## 노인인권

### 1 인권의 개념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노인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정책적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노인인권이라는 용어보다는 ‘노인학대’라는 용어를 노인인권 침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 국가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이 완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노인인권

### 1) 노인인권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인권에 취약한 장기요양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던 유교문화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가족 중심의 부양의식마저 퇴색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인인권이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충족을 우선 시 하여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인복지법의 개정(2004)으로 노인학대의 신고·조사·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전국 16개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05년 「Hot-Line 1389」가 함께 설치되어 노인인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노인인권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의사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은 의사표현이 용이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노인은 기본적인 인권인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존권 어느 것도 향유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노인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UN은 1991년 12월 16일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21세기를 전망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보

장에 관한 원칙을 나타낸 문서이다. UN의 권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노년층을 잠재가능성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고령사회를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의존적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미래발전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보호와 의존 중심의 기존 관점에서 통합성을 강조한 인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인권이 강조된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관점이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UN원칙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0).

### ① 독립(Independence)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②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보호(care)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존엄(Dignity)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 3)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인권에 대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관심이 제한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장소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저소득층 노인만을 보호 했었던 제한된 시설에서, 이제는 모든 노인을 포함하는 시설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1가지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06).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지역주민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Chapter

## II

# 노인학대

##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현황

###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그 사회와 문화에 따라 또는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중재를 계획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는 가족학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대중과 전문가의 관심을 뒤늦게 받았다. 1960년대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1970년대는 가족폭력, 그리고 1980년대는 아동 성학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노인 학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노인 법(Older Americans Act)에서는 노인 학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학대, 방임, 착취의 세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국 노인학대 지원센터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 금전적/물질적 착취, 기타, 자학/자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제1조2)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2010)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 2) 노인학대의 발생현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0)에 조사한 2009년 전국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토대로 노인학대의 일반적인 현황과 학대 피해노인의 현황, 학대 행위자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대 현황

2009년 전체 신고접수 건수를 최근 3년과 비교해 볼 때 (표 II-1)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3,996건, 2007년 4,730건, 2008년 5,254건에서 6,159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 사례는 2,274건, 2,312건, 2,369건에서 2,674건으로 일반사례는 1,722건, 2,418건, 2,885건에서 3,485건으로 증가 하였다.

표 II-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 연도    | 구분 | 건 수             |                 |                  | 증 감  |      |      |
|-------|----|-----------------|-----------------|------------------|------|------|------|
|       |    | 학대사례            | 일반사례            | 전체사례             | 학대사례 | 일반사례 | 전체사례 |
| 2006년 |    | 2,274<br>(56.9) | 1,722<br>(43.1) | 3,996<br>(100.0) | -    | -    | -    |
| 2007년 |    | 2,312<br>(48.9) | 2,418<br>(51.1) | 4,730<br>(100.0) | 1.7  | 40.4 | 18.4 |
| 2008년 |    | 2,369<br>(45.1) | 2,885<br>(54.9) | 5,254<br>(100.0) | 2.5  | 19.3 | 11.1 |
| 2009년 |    | 2,674<br>(43.4) | 3,485<br>(56.6) | 6,159<br>(100.0) | 12.9 | 20.8 | 17.2 |

신고 접수 유형은 전화를 통한 신고가 전체 학대사례 중 84.9% (2,271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문 13.6% (364건), 온라인 1.1% (28건), 서신 0.4% (11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2).

표 II-2

## 신고 접수 유형

(단위 : 건, %)

| 구분 | 전화              | 방문            | 온라인         | 서신          | 계                |
|----|-----------------|---------------|-------------|-------------|------------------|
| 건수 | 2,271<br>(84.9) | 364<br>(13.6) | 28<br>(1.1) | 11<br>(0.4) | 2,674<br>(100.0) |

(표 II-3)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생 장소에 따른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 2,674건 중 2,358건으로 88.2%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은폐성향이 강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 등을 통해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생활시설 이용노인의 증가에 따라 시설학대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경우 비록 상대적 학대 발생 건수는 낮더라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개입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지침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3

## 발생 장소

(단위 : 건, %)

| 구분 | 가정 내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병원          | 공공장소        | 기타          | 계                |
|----|-----------------|-------------|-------------|-------------|-------------|-------------|------------------|
| 건수 | 2,358<br>(88.2) | 55<br>(2.1) | 16<br>(0.6) | 66<br>(2.4) | 83<br>(3.1) | 96<br>(3.6) | 2,674<br>(100.0) |

발생 빈도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표 II-4)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다. 반면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방임이 신체적 학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없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표 II-4

발생 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 유형<br>빈도     | 신체적<br>학대       | 정서적<br>학대       | 성적<br>학대     | 경제적<br>학대     | 방임            | 자기<br>방임     | 유기           | 계                |
|--------------|-----------------|-----------------|--------------|---------------|---------------|--------------|--------------|------------------|
| 매일           | 197<br>(17.5)   | 410<br>(22.1)   | 6<br>(16.2)  | 129<br>(23.3) | 406<br>(50.4) | 79<br>(61.2) | 49<br>(59.8) | 1,276            |
| 1주일에<br>한번이상 | 475<br>(42.1)   | 721<br>(38.9)   | 15<br>(40.5) | 186<br>(33.6) | 191<br>(23.7) | 29<br>(22.5) | 8<br>(9.8)   | 1,625            |
| 1개월에<br>한번이상 | 241<br>(21.4)   | 390<br>(21.0)   | 5<br>(13.5)  | 120<br>(21.7) | 112<br>(13.9) | 9<br>(7.0)   | 6<br>(7.3)   | 883              |
| 3개월에<br>한번이상 | 60<br>(5.3)     | 93<br>(5.0)     | 4<br>(10.8)  | 23<br>(4.2)   | 21<br>(2.6)   | 4<br>(3.1)   | 3<br>(3.7)   | 208              |
| 6개월에<br>한번이상 | 40<br>(3.5)     | 66<br>(3.6)     | -            | 26<br>(4.7)   | 29<br>(3.6)   | 3<br>(2.3)   | 2<br>(2.4)   | 166              |
| 일회성          | 99<br>(8.8)     | 152<br>(8.2)    | 7<br>(18.9)  | 61<br>(11.0)  | 33<br>(4.1)   | 2<br>(1.6)   | 13<br>(15.9) | 367              |
| 파악안됨         | 15<br>(1.3)     | 21<br>(1.1)     | -            | 9<br>(1.6)    | 14<br>(1.7)   | 3<br>(2.3)   | 1<br>(1.2)   | 63               |
| 계            | 1,127<br>(24.6) | 1,853<br>(40.4) | 37<br>(0.8)  | 554<br>(12.1) | 806<br>(17.6) | 129<br>(2.8) | 82<br>(1.8)  | 4,588<br>(100.0) |

## (2) 학대 피해노인 현황

(표 II-5)와 같이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학대사례는 학대피해노인 2,674명 중 여성노인이 69.7% (1,864명)를 차지하였고, 남성노인은 30.3% (810명)를 차지하여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학대 피해노인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이며 의존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 명, %)

| 구분 | 남             | 여               | 계                |
|----|---------------|-----------------|------------------|
| 명수 | 810<br>(30.3) | 1,864<br>(69.7) | 2,674<br>(100.0) |

(표 II-6)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학대피해노인 남녀 모두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39.2% (526명) 다음으로 방임 20.6% (276명), 신체적 학대 20.0% (26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여성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40.8% (1,342명)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6.4% (870명), 방임 16.3% (537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6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 명, %)

| 유형<br>성별 | 신체적<br>학대       | 정서적<br>학대       | 성적<br>학대    | 경제적<br>학대     | 방임            | 자기<br>방임     | 유기          | 계                |
|----------|-----------------|-----------------|-------------|---------------|---------------|--------------|-------------|------------------|
| 남        | 269<br>(20.0)   | 526<br>(39.2)   | 3<br>(0.2)  | 165<br>(12.3) | 276<br>(20.6) | 69<br>(5.1)  | 35<br>(2.6) | 1,343<br>(100.0) |
| 여        | 870<br>(26.4)   | 1,342<br>(40.8) | 34<br>(1.0) | 396<br>(12.0) | 537<br>(16.3) | 64<br>(2.0)  | 48<br>(1.5) | 3,291<br>(100.0) |
| 계        | 1,139<br>(24.6) | 1,868<br>(40.3) | 37<br>(0.8) | 561<br>(12.1) | 813<br>(17.5) | 133<br>(2.9) | 83<br>(1.8) | 4,634<br>(100.0) |

※ 중복응답 포함

학대 행위자와의 동거여부라 함은 학대피해노인이 자신을 학대하는 학대 행위자와의 동거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와의 동거는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를 하면 학대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하기에 학대행위자의 동거수가 비동거수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관습이 많이 퇴색됨에 따라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따로 거주하지만, 부정기적인 방문으로 인한 학대도 많아 동거수와 비동거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I-7).

표 II-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 명, %)

| 구분 | 동거              | 비동거             | 계                |
|----|-----------------|-----------------|------------------|
| 명수 | 1,509<br>(56.4) | 1,165<br>(43.6) | 2,674<br>(100.0) |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라 함은 학대피해노인의 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의 학대피해노인이 43.3% (1,159명)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졸업 30.1% (805명), 중학교 졸업 8.4% (224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노인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I-8).

표 II-8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 명, %)

| 구분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파악 안됨        | 계                |
|----|-----------------|---------------|--------------|--------------|--------------|--------------|------------------|
| 명수 | 1,159<br>(43.3) | 805<br>(30.1) | 224<br>(8.4) | 205<br>(7.7) | 104<br>(3.9) | 177<br>(6.6) | 2,674<br>(100.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0)에서 학대피해노인 2,674명의 직업과 건강에 대한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학대피해노인이 91.3% (2,4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축산업 종사자 3.1% (82명), 단순노무종사자 2.6% (70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2,277명 중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49.%(1,115명)였고, 이 중 관절염이 22.5% (512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14.2% (324명), 당뇨병 10.6% (2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학대행위자 현황

2009년 학대피해노인 2,674명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사람은 3,019명으로 한 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학대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68.8% (2,078명), 여성이 31.2% (941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I-9).

표 II-9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명, %)

| 구분 | 남               | 여             | 계                |
|----|-----------------|---------------|------------------|
| 명수 | 2,078<br>(68.8) | 941<br>(31.2) | 3,019<br>(100.0) |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분포 결과는 남성의 경우 40~49세가 31.7% (65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50~59세가 31.3% (29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 부양자 층인 40~50대가 전체의 59.5%를 보이고 있어, 학대행위자의 과반수 이상이 40~50대임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의 경우 전체 학대행위자 중 755명으로 25.0%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6.0%(651명→755명) 증가한 수치이다. 매년 학대행위자 중 노(老)-노(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양문제가 대두됨으로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표 II-10).

표 II-10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 연령<br>성별 | 10-19<br>세  | 20-29<br>세  | 30-39<br>세    | 40-49<br>세    | 50-59<br>세    | 60-69<br>세    | 70세<br>이상     | 파악<br>안됨   | 계                |
|----------|-------------|-------------|---------------|---------------|---------------|---------------|---------------|------------|------------------|
| 남        | 10<br>(0.5) | 46<br>(2.2) | 272<br>(13.1) | 659<br>(31.7) | 571<br>(27.5) | 259<br>(12.5) | 261<br>(12.6) | -          | 2,078<br>(100.0) |
| 여        | 9<br>(1.0)  | 16<br>(1.7) | 109<br>(11.6) | 271<br>(28.8) | 295<br>(31.3) | 127<br>(13.5) | 108<br>(11.5) | 6<br>(0.6) | 941<br>(100.0)   |
| 계        | 19<br>(0.6) | 62<br>(2.1) | 381<br>(12.6) | 930<br>(30.8) | 866<br>(28.7) | 386<br>(12.8) | 369<br>(12.2) | 6<br>(0.2) | 3,019<br>(100.0) |

학대행위자의 연령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의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30대~40대와 손자·녀인 10대~20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50대~60대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0세 이상 학대행위자의 경우는, 50대~60대와는 달리 10대~40대와 동일하게 신체적 학대가 방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1).

표 II-11 학대행위자의 연령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 명, %)

| 유형<br>성별  | 신체적<br>학대       | 정서적<br>학대       | 성적<br>학대    | 경제적<br>학대     | 방임              | 자기<br>방임      | 유기           | 계                |
|-----------|-----------------|-----------------|-------------|---------------|-----------------|---------------|--------------|------------------|
| 10-19세    | 12<br>(40.1)    | 16<br>(53.3)    | -           | 1<br>(3.3)    | 1<br>(3.3)      | -             | -            | 30<br>(100.0)    |
| 20-29세    | 27<br>(24.3)    | 46<br>(41.4)    | 2<br>(1.8)  | 12<br>(10.8)  | 17<br>(15.3)    | 1<br>(0.9)    | 6<br>(5.4)   | 111<br>(100.0)   |
| 30-39세    | 168<br>(24.7)   | 264<br>(38.9)   | 2<br>(0.3)  | 93<br>(13.7)  | 118<br>(17.4)   | 9<br>(1.3)    | 25<br>(3.7)  | 679<br>(100.0)   |
| 40-49세    | 405<br>(23.9)   | 680<br>(40.2)   | 6<br>(0.4)  | 222<br>(13.1) | 321<br>(19.0)   | 23<br>(1.4)   | 36<br>(2.1)  | 1,693<br>(100.0) |
| 50-59세    | 296<br>(19.7)   | 574<br>(38.3)   | 11<br>(0.7) | 197<br>(13.1) | 354<br>(23.6)   | 25<br>(1.7)   | 43<br>(2.9)  | 1,500<br>(100.0) |
| 60-69세    | 128<br>(19.5)   | 263<br>(40.0)   | 8<br>(1.2)  | 70<br>(10.6)  | 146<br>(22.2)   | 35<br>(5.3)   | 8<br>(1.2)   | 658<br>(100.0)   |
| 70세<br>이상 | 182<br>(27.9)   | 225<br>(34.5)   | 14<br>(2.1) | 49<br>(7.5)   | 75<br>(11.5)    | 101<br>(15.5) | 7<br>(1.1)   | 653<br>(100.0)   |
| 파악<br>안됨  | 1<br>(10.0)     | 3<br>(30.0)     | -           | 3<br>(30.0)   | 3<br>(30.0)     | -             | -            | 10<br>(100.0)    |
| 계         | 1,219<br>(21.0) | 2,071<br>(38.7) | 43<br>(0.5) | 647<br>(11.3) | 1,035<br>(23.8) | 194<br>(3.5)  | 125<br>(1.2) | 5,334<br>(100.0) |

※ 중복응답포함

(표 II-12)는 학대행위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51.2% (1,5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딸 11.3% (342명), 며느리 9.6% (291명)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

자로 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통문화사상으로 인해 부모의 부양의 무가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에 대한 아들의 부양부담이 노인학대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들, 딸, 며느리를 포함하는 친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6.2% (2,601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 %)

| 구분 | 학대<br>피해<br>노인<br>본인 | 친족           |                 |              |               |             |             |             |                 | 타인           | 기관          | 계                |
|----|----------------------|--------------|-----------------|--------------|---------------|-------------|-------------|-------------|-----------------|--------------|-------------|------------------|
|    |                      | 배우자          | 아들              | 며느리          | 딸             | 사위          | 손자녀         | 친척          | 소계              |              |             |                  |
| 명수 | 128<br>(4.2)         | 279<br>(9.3) | 1,544<br>(51.2) | 291<br>(9.6) | 342<br>(11.3) | 28<br>(0.9) | 58<br>(1.9) | 59<br>(2.0) | 2,601<br>(86.2) | 228<br>(7.6) | 62<br>(2.0) | 3,019<br>(100.0)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34.4% (1,0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업 이상이 19.5% (590명), 중학교 졸업 18.6% (562명)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13).

표 II-13

##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 명, %)

| 구분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br>이상    | 파악<br>안됨     | 계                |
|----|--------------|---------------|---------------|-----------------|---------------|--------------|------------------|
| 명수 | 192<br>(6.4) | 431<br>(14.3) | 562<br>(18.6) | 1,039<br>(34.4) | 590<br>(19.5) | 205<br>(6.8) | 3,019<br>(100.0)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이라 함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한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은 3,019명 중 직업이 없는 무직이 48.9% (1,476명)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노무 종사자 11.7% (353명), 서비스·판매종사자 9.1% (276명)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의 60.6%가 직업이 없거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로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직업의 특성은 노인학대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중독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는 학대 행위자 총 3,019명 중 418명 (13.8%)은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18명의 중독자 중 알코올사용 장애가 390명 (9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박중독 17명 (4.1%), 약물사용 장애 11명 (2.6%) 순으로 나타났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0).

## 2 노인학대의 특성 및 유형

### 1)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① 노인의 특성, ② 학대 가해자의 특성, ③ 관계적 특성, ④ 가정 환경적 특성, ⑤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 ① 노인의 특성은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고,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 ② 학대 가해자의 특성은 알콜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고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③ 관계적 특성은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 ④ 가정 환경적 특성으로는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 ⑤ 사회구조적 특징으로는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 2) 노인학대의 유형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 노인학대 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표 II-14)는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업무수행 지침(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4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정의 및 행위 증상

| 유 형    | 정의·행위·증상 |                                                                                                                                                                                                   |
|--------|----------|---------------------------------------------------------------------------------------------------------------------------------------------------------------------------------------------------|
| 신체적 학대 | 정 의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 행 위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br>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br>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br>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br>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br>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br>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br>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br>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
|        | 증 상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br>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br>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찢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 유 형       | 정의·행위·증상 |                                                                                                                                                                                                                                                                                                                                                                                                                                                        |
|-----------|----------|--------------------------------------------------------------------------------------------------------------------------------------------------------------------------------------------------------------------------------------------------------------------------------------------------------------------------------------------------------------------------------------------------------------------------------------------------------|
|           |          | <p>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p> <p>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p> <p>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p> <p>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p> <p>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p> <p>이상한 체중감소</p> <p>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p>                                                                                                                                                                                                                  |
| 언어·정서적 학대 | 정 의      | <p>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p>                                                                                                                                                                                                                                                                                                                                                                                            |
|           | 행 위      | <p>욕설을 퍼붓는다.</p> <p>노인에게 고향을 지른다.</p> <p>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p> <p>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p> <p>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p> <p>유아처럼 다룬다.</p> <p>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p> <p>외출을 시키지 않는다.</p> <p>노인을 보지 않는다.</p> <p>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p> <p>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p> <p>창피를 준다.</p> <p>비웃거나 조소를 한다.</p> <p>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p> <p>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p> <p>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p> <p>말을 험오스럽게 한다.</p> |
|           | 증 상      | <p>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p> <p>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 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p> <p>표정이 없다.</p> <p>정서 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p> <p>무기력하다.</p> <p>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p> <p>고개를 숙이고 있다.</p> <p>웃는 모습이 아니다.</p> <p>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p> <p>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p>                                                                                                                                                                                     |

| 유 형    | 정의·행위·증상 |                                                                                                                                                                                                                                                                                                                                                                                                        |
|--------|----------|--------------------------------------------------------------------------------------------------------------------------------------------------------------------------------------------------------------------------------------------------------------------------------------------------------------------------------------------------------------------------------------------------------|
| 성적 학대  |          | <p>걱정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p> <p>눈이 쑥 들어가 있다.</p> <p>가족의 안색을 살핀다.</p> <p>가족을 피하려고 한다.</p> <p>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p>                                                                                                                                                                                                                                                                                          |
|        | 정 의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 행 위      | <p>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p> <p>성적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p> <p>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p> <p>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p> <p>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p> <p>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 한다.</p>                                                                                                                                  |
|        | 증 상      | <p>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p> <p>속옷이 찢어짐</p> <p>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p> <p>성병</p> <p>우울, 사회관계의 단절</p> <p>수면장애</p> <p>분노 또는 수치심</p>                                                                                                                                                                                                                                                                     |
| 재정적 학대 | 정 의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        | 행 위      | <p>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p> <p>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p> <p>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p> <p>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p> <p>대리권을 악용한다.</p> |
|        | 증 상      | <p>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p> <p>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p>                                                                                                                                                                                                                                                                                                                                        |

| 유 형  | 정의·행위·증상 |                                                                                                                                                                                                                                                                                                                                                                                                                                   |
|------|----------|-----------------------------------------------------------------------------------------------------------------------------------------------------------------------------------------------------------------------------------------------------------------------------------------------------------------------------------------------------------------------------------------------------------------------------------|
|      |          | <p>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p> <p>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p> <p>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p> <p>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p> <p>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p>                                                                                                                                                                                                                                                                |
| 방 입  | 정 의      | <p>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br/>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br/>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p>                                                                                                                                                                                                                                                                                             |
|      | 행 위      | <p>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p> <p>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p> <p>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p> <p>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p> <p>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p> <p>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p> <p>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p> <p>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p> <p>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p>                                                                                                                    |
|      | 증 상      | <p>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p> <p>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p> <p>욕창이 있다.</p> <p>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p> <p>악취가 난다.</p> <p>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p> <p>식사를 거르고 있다.</p> <p>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p> <p>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p> <p>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p> <p>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p> <p>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p> <p>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p> <p>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p> |
| 자기방임 | 정 의      | <p>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br/>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br/>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p>                                                                                                                                                                                                                                                                                                 |

| 유 형 | 정의·행위·증상 |                                                                                                                                                                               |
|-----|----------|-------------------------------------------------------------------------------------------------------------------------------------------------------------------------------|
|     | 행 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br>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     | 증 상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br>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br>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 유 기 | 정 의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 행 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br>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br>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br>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br>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
|     | 증 상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br>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br>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br>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 3 노인학대의 요인

노인학대는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피학대자 또는 학대자의 정신과 신체적 상황이 합쳐져서 발생한다(김현수, 1997). 중앙노인전문기관(2010)은 노인학대 요인을 노인과 관련된 요인,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에 대한 위험이 높다.

###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의기소침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 ⑥ 세대 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 ⑧ 고립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 ① 신체적 정신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

###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잘 부양할 수 없다.

###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 노인부양에 적절치 않다.

###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 ⑧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 3) 가족상황적 요인

###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4) 사회적요인

####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노인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노인을 무능력하다고 보는 선입견 때문에 사회의 많은 현상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고 있다.

####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서윤(2001)은 노인학대 요인을, 노인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노인학대가 발생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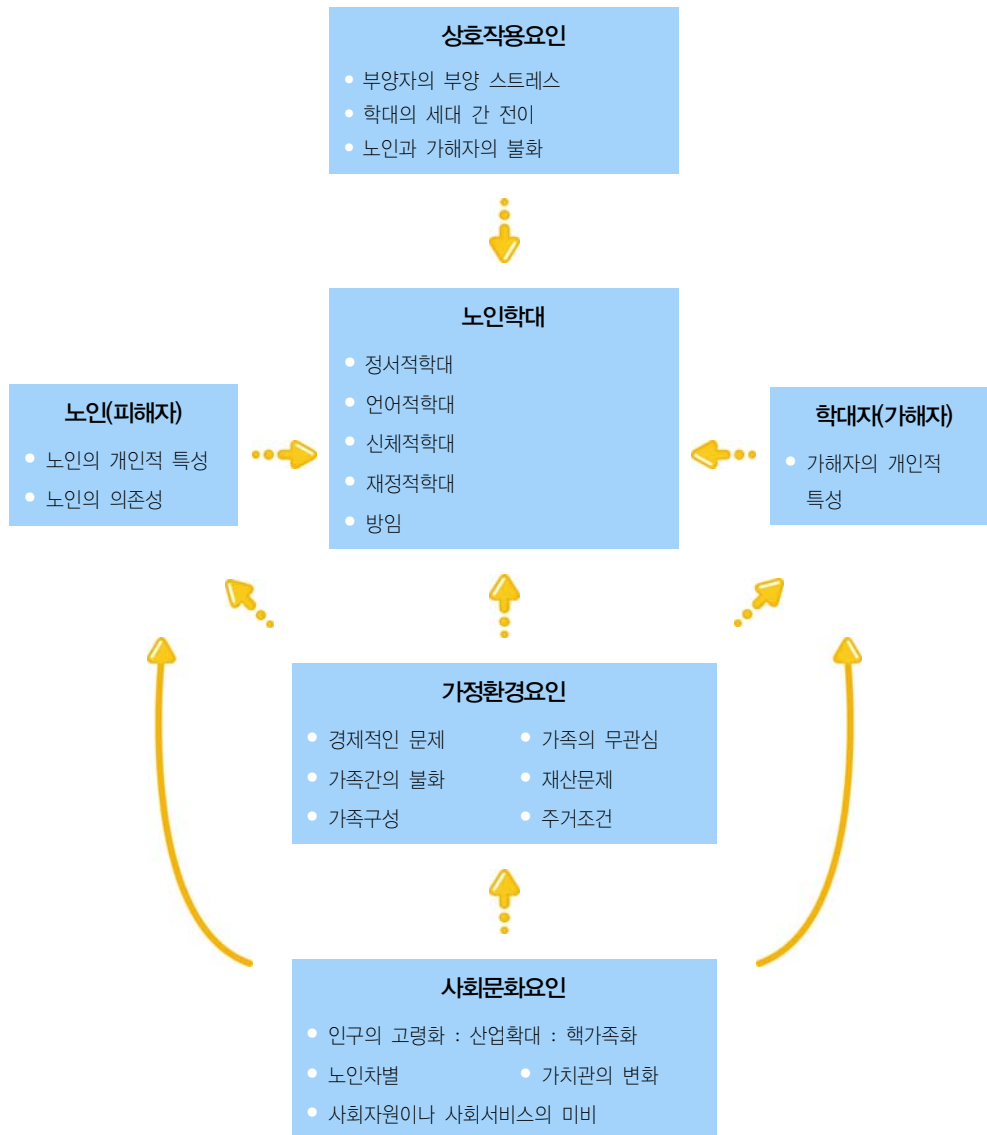


그림 II-1 노인학대 발생 메커니즘

## 4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및 벌칙

###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의료법 제3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② 노인복지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 벌 칙(노인복지법 제 7장)

- ① 노인복지법 제39조 9의 1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1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2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전략

### 1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특성 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권중돈, 2006).

####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 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노인의 인권존중에 관한 사례관리

본 장에서는 노인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13개의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2008)에서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제시되었던 사례의 일부이다. 제시된 사례를 가지고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자.

#### ❖ 사례 1 -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N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 ❖ 사례 2 -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K 어르신은 편마비임에도 낮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셨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신다. 자기들도 밤새 기저귀 차고 있다가 싸 봐야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거라며…….

#### ❖ 사례 3 - 개인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간식

E 어르신은 평소 사과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가을철에는 시설에서 간식으로 대부분 사과가 제공된다. 다른 노인들이 간식으로 사과를 드실 때, 할머니는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서운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

#### ❖ 사례 4 - 위생관리 소홀

나랑 같이 방을 쓰는 A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혼자서 대소변을 못 가려. 그런데 선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기저귀를 금방 갈아주지 못하거나 갈아줘도 대충 대충 해주고 바쁘다며 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견디다 못해 다른 방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 잔소리도 해보고, 인상도 써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참고 사는 것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 ❖ 사례 5 - 벌(罰)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A 할아버지가 있어요. A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요양보호사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罰)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 ❖ 사례 6 -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사자방 C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어! 진짜인가보네, 얼굴 빨개진걸 보니……. (중략) ……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빠치고 그래요. 미안해요.

아이~, ××!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썼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씹워가지고 내보낼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봐, 얼른…….

#### ❖ 사례 7 - 성적 학대

저는 교육기관에서 배운대로 와상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려할 때 침대 주변에 커튼을 치고 하려고 준비하는데 시설장이 오시더니 그러다가 커튼에 똥 묻으면 빨래만 늘어난다며, 할머니는 창피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갈아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지만 시설장이 지시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기는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 ❖ 사례 8 - 종교의 자유 침해

아프다고 해도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난리야. 아프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고……. 사실 난 종교가 이 시설 운영자와는 다르거든,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원들 몰래 기도해.

#### ❖ 사례 9 - 여가활동 참여 선택권 무시

월요일은 음악활동, 화요일은 미술활동, 수요일은 운동교실… 선생님이 열심히 해. 잘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 아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요가 배운다고 그것도 유명한 강사를 돈 많이 주고 데려온 거니까 꼭 참석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거든. 근데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난리가 아니데. 그래서 한두 번 따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건강에 좋을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영 아녀. 그런 일이 있는 뒤로 나만 한참 고생했어.

#### ❖ 사례 10 -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의 사생활 침해

대체로 건강한 A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B 어르신과 한 방을 사용하고 있다. 편마비로 식당까지 이동이 어려운 B 어르신은 주로 방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먼저 식사를 마치고 온 A 어르신은 B 어르신에게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B 어르신의 식사속도가 답답하다며 자기가 식판을 뺏어서 갖다 놓는 등 마치 본인이 직원인 것처럼 B 어르신의 생활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있다. 그러나 B 어르신은 A 어르신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심기가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A 어르신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

#### ❖ 사례 11 - 어르신의 성희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수준이 낮거나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A 할아버지가 B 여자 요양보호사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몸을 밀착하는 등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신다. 목욕이나 위생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성기 주변을 닦을 때 쳐다보거나 웃으시며, 지나가는 중에도 딸 같이라며 어깨, 팔,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 사례 12 - 비급여 서비스 이용 권유

담당 선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이용하고, 저게 좋으니까 저것도 이용하라고 하도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했었지. 아 그런데 그 달 말일이 되니까 보험적용이 안 되는 서비스라나 뭐라나 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거야. 나 참 누가 시켜달란 것도 아니고,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돈을 내라 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돈을 내라고 할 거면 미리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 ❖ 사례 13 - 서비스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생활 보호

B 어르신의 경우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는데 매주 목욕을 할 때 마다 침대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탕 까지 벗은 상태로 갔다가 목욕 후 침대에 와서 새 옷으로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어르신은 목욕을 싫다고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들은 목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매번 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고수현(2009). 노인복지론. 경기: 학현사.
- 고재욱, 황진수(2010). 노인복지론. 경기: 양서원.
- 국가인권위원회(2008).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 권중돈(200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현수(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보건복지부(2004).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
- 서운(2001). 韓國における高齢者虐待の實態に関する研究. 日本佛教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송지원(2001).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호(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0). 2009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한국노인복지학회(2006). 노인복지학 사전.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연구자 및 자문위원

책 임 연 구 자 : 강윤희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부교수)

공 동 연 구 자 : 김미영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조교수)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조교수)

연 구 원 : 권유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미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윤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박금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양인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윤상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자 문 위 원 :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조혜숙 (너싱홈 그린힐 원장)

구재관 (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최경숙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임숙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홍순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사무관)

변상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주무관)

남미영 (한국재가 노인복지협회 부장)

김정순 (한국재가 노인복지협회 강남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엄은미 (한국재가 노인복지협회 마포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김지현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 가온 대표)

김영숙 (너싱홈 그린힐 요양보호사)

이정숙 (너싱홈 그린힐 요양보호사)

서영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이승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